

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



수 신 사업장 대표이사

(경 유) 안전업무 담당자

제 목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안전을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50호(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)에 근거하여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3. 우리협회에서는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,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관련법규 준수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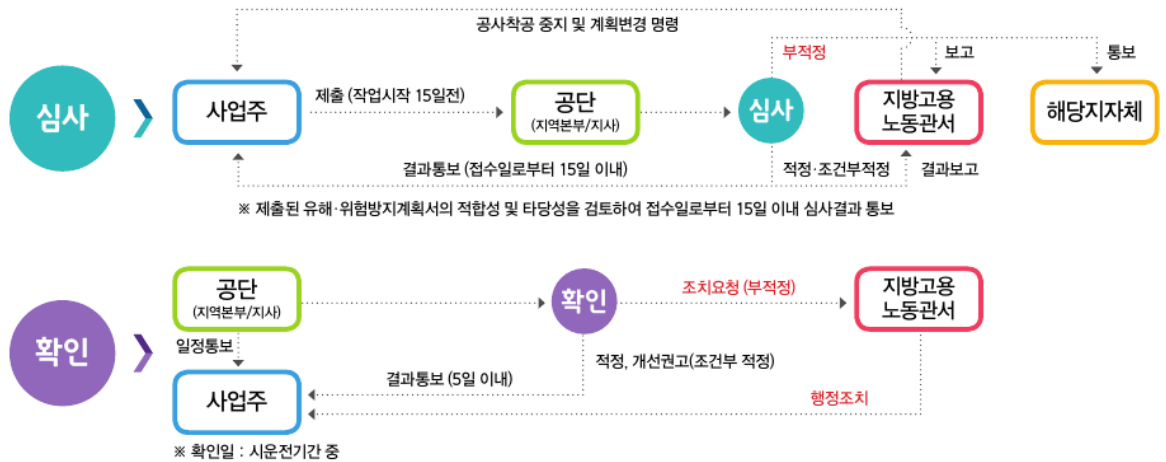
가. 제출대상 사업장 (붙임자료 참조)

| 대상업종 | | 대상설비(업종물문) | |
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▶ 설치·이전 [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] ▶ 증설·교체·개조·이설[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 이상] | | | |
| 25***, 23*** | 2009.01.01. 이후 | ▶ 용해로 ▶ 화학설비 ▶ 건조설비 | 2009.01.01. 이후 |
| 10***, 16***, 22*** 24***, 29***, 30*** 32***, 33*** | 2012.07.01. 이후 | ▶ 가스집합용접장치 ▶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| |
| 20***, 261**, 262** | 2014.09.13. 이후 | [국소배기장치·밀폐설비· 전체환기설비]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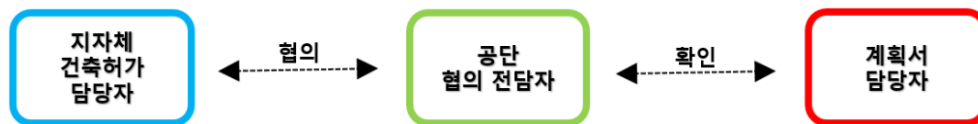
나. 제출 시기 :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2부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

다. 대상확인 및 작성문의 : 063-212-4022(안전컨설팅부 이만섭 선임차장)

라. 심사·확인절차



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4조1항15호(공장의 건축허가)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공장설립 승인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무확인



붙임 :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내 리플렛 1부. 끝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장

기안자 선임차장 03/30 이만섭 지회장 03/30 강종현

협조자 차장 03/30 양재영 부장 03/30 고영태

시행 전북안전컨설팅부-201 (2026. 3. 30.) 접수 ()

우 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가 3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팔복동가) 별관층 / <https://www.safety.or.kr>

전화 063-212-4022 / 팩스 0507-351-7040 / 이메일 20000seob@safety.or.kr / 공개